

제18675호 2016. 1. 8.(금)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6877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6
- 대통령령제26878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5

【부 령 령】

- 환경부령제635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
- 해양수산부령제182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6

【고 시】

- 법무부고시제2016-1호(국적상실) 43
- 법무부고시제2016-2호(국적상실) 45
- 법무부고시제2016-3호(국적상실) 47
- 국방부고시제2016-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0
- 국방부고시제2016-3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0
- 국방부고시제2016-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6-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6-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1
- 국방부고시제2016-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2
- 국방부고시제2016-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2
- 국방부고시제2016-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3
- 국방부고시제2016-1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54
- 국방부고시제2016-1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54
-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호(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55
- 환경부고시제2016-1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 56
- 환경부고시제2016-2호(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56
- 관세청고시제2016-2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57
- 문화재청고시제2016-1호(〈2016년도〉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60

(이면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하천공사준공)	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6호(하천점용 허가).....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7호(하천점용 허가).....	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8호(하천점용 허가).....	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0호(하천점용 허가).....	7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호(하천점용 연장허가).....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호(하천점용 연장허가).....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호(하천점용 변경허가).....	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접도구역 지정).....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호(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호(접도구역 지정).....	7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1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7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호(사설항로표지 폐지).....	79
○충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7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3호(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9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호(한국산업표준 제정).....	90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5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인사혁신처공고제2016-16호(2016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추가<변경>)	9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호(공시송달)	9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호(금융투자업 등록).....	9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호(원자로조종면허<SRO, RO> 정지 및 취소처분)	93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호(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4
○통일부공고제2016-1호(남북교역·경협 관리업무 위탁)	9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호(상세기준<개정>)	9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83호(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호(신기술지정 신청).....	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호(신기술지정 신청).....	1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호(신기술지정 신청).....	1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호(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호(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호(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104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1호(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3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10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호(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05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7호(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수탁자 모집)	10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호(공시송달)	10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호(공시송달)	108

2. 명칭 : 파이프 트러스 빔과 횡방향 탈부착 측면 방음판 및 토출소음 저감용 직각흡음체를 이용한 방음터널 (PosLST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모두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트러스 빔을 이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함으로써 우각부 모멘트와 지점부 모멘트를 저감시키고 강성을 증대시켜 최적화된 방음터널 프레임의 구성과 경량화가 가능하고, 방음터널의 측벽과 지붕에 설치되는 방음판의 설치 구조를 개선하여 작업성과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방음터널의 지붕에 내측으로 직각흡음체를 설치하여 토출소음을 저감시킴으로써 방음터널의 연장을 단축시킬 수 있어 경제적인 방음터널이다.

<범위>

상현재와, 하현재 및 상·하현재를 연결하는 사재가 모두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 트러스 빔을 파이프 지주에 플랜지 접합하여 방음터널 프레임을 구성하고, 방음터널 프레임 사이의 측벽에 측면 방음판이 횡방향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되며, 일부 파이프 트러스 빔에는 토출소음 저감용 직각흡음체가 설치된 방음터널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강물

나. 전화번호 : ① 070-8808-6380

2. 명칭 : 3차원 설계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PIP-3D)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에 의해 공장제작된 PIP강관(뒷받침쇠가 부착된 강관 또는 원형으로 말린 강관)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1본씩 부설위치까지 전동차로 이동·삽입후 그 지점부터 뒷받침쇠를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여 일체형 3중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강관삽입공법

<범위>

3차원 설계에 의해 공장제작된 PIP강관(강관)을 현장에서 1본씩 부설위치부터 뒷받침쇠를 이용한 맞대기용접으로 배관하는 비굴착 강관삽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호

「건축구조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일부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 방법*,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왔으나, 이번 개정은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법을 반영·적용하기 위한 것임

* 내진설계 제도개선 (‘09.12) ** 설계하중 일부 변경(‘14.7, ‘15.10)

구분	주요 개정사항
제1장 총칙	○ 성능설계법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 지진 및 풍하중에 대한 특별검사 방법 제시 - 제진·면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의 지진하중 특별검사 및 풍속 35m/s이상 지역의 높이 22m이상 건축물의 풍하중 특별검사이, 용접부, 고력볼트 체결부 등 접합상세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
제3장 설계하중	○ 건축물 설계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에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의한 하중 추가 ○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 조정 ○ 풍하중 산정시 사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에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5m/s단위로 구분된 풍속도를 2m/s단위로 세분화 ○ 풍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강풍 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풍하중 산정방법 신설